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정	2005. 11. 16	조례	제1969호
일부개정	2011. 4. 1	조례	제2311호
일부개정	2011. 11. 2	조례	제2360호
전부개정	2016. 10. 20	조례	제2755호
일부개정	2017. 11. 16	조례	제2884호(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2019. 3. 5	조례	제3032호
일부개정	2019. 11. 15	조례	제3145호(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	2020. 7. 10	조례	제3213호(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20. 11. 13	조례	제3258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21. 7. 9	조례	제3321호(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하여 기업활동의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3.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4.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말한다.
5. “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액셀러레이터”라 한다)를 말한다.
7. “창업지원시설”이란 중소기업의 창업 촉진 및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공간·교육·경영·기술·판로·자금 등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8. “기업지원시설”이란 우수기업의 입주·유치 및 기업의 창업과 성장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제7호의 창업지원시설을 포함한다.

9.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10. “기업지원기관”이란 중소기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투자기관, 기업 등을 말한다.
11.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간의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12.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법 제2조제6항에 따른 지구를 말한다.

## 제2장 기업활동 촉진

제3조(창업지원) 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 자금, 제품 개발, 기술 개발, 판로개척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 및 예비창업자(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창업자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출연·보조·투자·융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3조의2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창업·기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15, 2020. 11. 13>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재창업과 같은 법 제2조 제2의2호에 따른 재창업자에 대한 지원은 제1항의 창업지원과 같다.

제3조의2(유망창업기업) ① 시장은 창업기업의 효율적인 육성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경제적 성과, 사회적 성과, 혁신적 성과 및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유망창업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유망창업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망창업기업에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증서 및 현판 교부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3. 그 밖에 시장이 유망창업기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0. 11. 13]

제4조(민관 협력 창업자 발굴·육성) ① 시장은 유망 창업자를 효과적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제2조제6호에 따른 액셀러레이터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3. 법 제4조의9에 따른 전담회사
  4. 그 밖에 시장이 유망 창업자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지원기관
- ② 시장은 협력기관이 발굴한 창업자가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하도록 지원할 수 있고, 창업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협력기관이 관내 창업 촉진 및 창업자 육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창업자의 관내 정착 지원)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이나 시와 협약을 맺고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 중인 기관에서 배출되는 우수 졸업기업의 관내 정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업 등)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기업 등과 연계하여 창업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기업지원) 시장은 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술개발 사업
2. 국내외 판로개척 및 수출경쟁력 강화 사업
3.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권 지원사업
4. 기업 간 협력 증진 사업
5. 기업 인력 양성 및 인재 채용 지원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기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위탁관리) ① 시장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연구, 교육 및 전시 시설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2. 창업지원시설 및 기업입주지원시설(제2조제9호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포함 한다)
  3. 검사, 시험 및 공용장비 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 ② 시장은 기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업지원기관 또는 기업관련 단체에 기업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설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기업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위탁기관과 협약으로 정한다.
-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 11. 15>

제9조(기업지원시설의 공유재산 지원 등) ① 시장은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이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업지원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 ②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관내에서 기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이 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시설비, 장비설치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업지원시설 입주대상) ① 시에서 운영하는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관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1.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
2.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업을 영위 하는 기업
3. 제1호 및 제2호를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조직된 기업관련단체
4. 법률, 세무, 회계, 노무, 금융, 투자, 창업보육, 홍보·마케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법인
5. 그 밖에 시장이 입주대상으로 인정하는 기업

- ② 기업의 지사가 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는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창업자는 시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시설에 입주할 수 있다.
- ④ 시 이외의 지역에 있는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본사, 지사, 연구소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입주시킬 수 있다.
- ⑤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입주기업과 기업지원 사업을 협력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우수기업 선정) ① 시장은 지역산업 발전과 기업인의 사기진작 및 시정참여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② 우수기업 선정의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1. 13>

제12조(우수기업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또는 해당 기업의 기업인에게는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 1. 「안양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육성기금 조례”라 한다)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우선 지원
- 2.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우대
- 3.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 감면
- 4. 시에서 주관하는 문화·예술·체육대회 등에의 초대
- 5.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및 기업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 ② 시장은 선정된 우수기업에게는 「안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세 세무조사를 유예할 수 있다.

제13조(예우 및 지원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 1. 중대한 재해, 직업병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되거나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게 된 경우
- 3. 업종을 변경하여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 4. 그 밖에 시장이 예우와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기관단체 지원) ① 시장은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지원기관이나 기업관련단체가 수행하는 창업촉진 및 기업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과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창업지원시설에는 우선적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3장 기업 및 투자 유치 지원 <개정 2020. 11. 13>

제16조(지원대상) 시장은 국내기업(매출액 10억원 이상이고, 부채비율이 업종별 비율 이하인 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유재산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관내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이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자금지원) 시장은 육성기금 조례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3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관내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관내 기업이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확장하거나, 관내로 이전하고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제19조(기업환경 개선) 시장은 국내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또는 투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로, 상·하수도, 통신망, 공용주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다.

## 제4장 기업지원 심의위원회

제20조(설치) 시장은 기업활동 촉진과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시책 등의 심의를 위하여 안양시 기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기본계획
2. 시 소유 기업지원시설의 설치계획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우수기업의 선정
5.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 업종 및 융자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 (육성 기금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사항)
6. 기업 및 투자유치 포상 여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안양시의회 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3>

제2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안양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3>

[제목개정 2020. 11. 13]

제25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

##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사는 기업지원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업지원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26조(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

## 제5장 보칙

제27조(기업유치 포상) ① 시장은 국내·외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민간인 및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1건당 민간인은 5천만원, 공무원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 3. 5 조례 제303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기업지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③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대부 관련 계약은 종전의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 11. 15 조례 제3145호,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및 제8조제4항 중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각각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⑦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3호,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안양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안양시 위원회 수당 등의 지급  
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부터 ⑯ 까지 생략

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9 조례 제3321호,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 등에 관한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업을 영위  
하는 기업

② 생략

